

본 내용은 예탁증권담보용자 및 매도증권담보용자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전하는 내용과 고객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 
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대출에 대한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대출거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## 1. 개념

- 예탁증권 담보용자는 고객의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를 말한다.

## 2. 대출약정

- 1) 내국인 실명 개인, 내국 법인에 한하여 당사 내 1인 다수계좌에 대해 약정 가능하다.
- 2)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을 통해 고객이 직접 대출약정을 할 수 있고, 대출약정은 고객의 해지 전까지 유효하다.
- 3) 대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고객은 약정이 임의 해지된다
- 4) 채무불이행고객, 사고계좌 등은 제외한다.

## 3. 대출금액 및 금리

- 1) 대출금액은 해당종목의 전일종가 50% 이하 수준에서 결정한다.
- 2) 대출금리는 해당종목별로 A종목은 7.5%, B종목은 8%를 적용한다.
- 3)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및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4) 대출이자는 매월 첫 영업일에 후취하며(중도 상환의 경우 상환 시에 징수) 예수금이 납부할 이자보다 적을 경우에 이자는 징수되고 나머지 금액만 연체 처리된다 (연체이자율 연 12%)
- 5) 매월 첫 영업일 정기이자 자동 징수 시 미수금 및 기타제비용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.

## 4. 대출기간

- 1) 대출기간은 기본 90일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.(총 360일)
- 2) 대출기간 종료 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대출불가종목의 만기연장은 불가하다.
- 3) 만기연장 시 종목 및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다.

## 5. 대출한도

- 1) 대출한도는 원칙적으로 개인20억원, 법인30억원 이하로 한다.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품의를 올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) 해당종목의 재무상황 및 일 평균 거래대금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.

## 6. 대출협의

영업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 고객별로 담당임원 또는 회사 내 심의기구의 심의 후 대출한도, 대출기간, 담보유지비용, 추가담보제공기간, 대출비율, 대출이자율 등을 고객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7. 대출거래 대상종목

- 1) 대출가능종목은 재무건전성과 시장유동성 등에 기초하여 당사 내부적으로 결정한 증권에 기초하여 선정된 종목에 한한다.
- 2) 다음 종목은 대출거래가 제한된다.
  -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,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종목
  -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종목
  -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하였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종목
  - 위탁증거금을 100% 징구하는 종목
  - 당사가 대출거래가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증권

## 8. 대출신청

- 1) 대출신청인의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대출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승인 받으면 대출금 위탁계좌에 입금된다..
- 2) 1회 신청최저한도는 1만원이다.
- 3) 평일 16:00까지 신청할 수 있다.
- 4) 미수 발생 계좌 대출 조건 : 대출가능금액이 미수금보다 큰 경우에만 가능하다(대출금은 미수금 먼저 상환됨).

## 9. 담보관리

담보유지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출금 상당액의140%(또는 협의한 담보유지비율)</li> <li>- 계산 예시 전일종가 10,000 원인 주식 1,000 주를 담보로 5,000,000 원을 대출받고 이후 주가가 6,800 원으로 하락시 담보유지비율 계산 (6,800 원 x 1,000 주) / 5,000,000 원 = 136%</li> </ul>
담보부족발생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담보유지비율 130% 미만 : 추가담보제공요구일 당일까지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익 영업일에 임의 상환함</li> <li>- 담보유지비율 130%이상 140%(또는 협의한 담보유지비율)미만 : 추가담보제공요구일 익영업일까지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익 영업일에 임의 상환함</li> <li>- 이메일, 문자메세지, 팝업 등으로 통보된 추가납입금액은 추가 납부 제공 기간 동안 주가변동 등으로 담보 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음.</li> </ul>
추가담보요구 통보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 : SMS (또는 E-mail 발송)</li> <li>⇒ SMS는 당일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5시 이후 발송(1,2회차 발송)</li> <li>- 휴대폰 통지: 대출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추가 연락</li> </ul>
담보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체대상 유가증권이 동일 종목군일 경우만 교체 가능함.</li> <li>- 타 종목군으로의 담보교체는 불가능함.</li> </ul>

- 1) 만기일까지 고객이 직접 매도상환 (유통대주인 경우 매수상환)이나 현금상환(신용대주인 경우 현물) 처리하지 않으면 익 영업일 현금 상환 후 나머지 부족액에 대하여 반대매매 처리된다.
- 2) 담보부족 시 16시 기준으로 담보비율이 관리되므로 장중 일시적으로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여도 담보부족횟수는 그대로 유지된다. (담보비율 및 담보부족횟수의 계좌반영시간은 16시 이후이며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)
- 3) 반대매매 처리방법
  - 반대매매 처리 전 현금상환 범위 내에서 상환을 먼저 해야 한다.
  - 현금상환->신용융자->예탁증권담보융자->유통대주->그 밖의 증권 (현금주식, 채권)
  - 따라서 신용주식 상환 후 상환차손 발생부분까지 감안하여 당일에 현금주식까지 반대매매 한다.

### 11. 대출금 상환 및 만기연장

- 1) 현금상환 : 대출 만기일전에도 일부 또는 전액 현금상환이 가능하다.
- 2) 매도상환
  - 담보예탁증권의 매도대금으로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
  - 대출 만기일전에도 일부 또는 전액 매도상환이 가능
- 3) 만기통보 : 당사는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일 4영업일 전에 만기상환을 우편으로 통보하며, 고객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미상환할 경우 만기일 익 영업일 오전 동시호가로 담보수량 및 부족분에 해당수량을 자동 반대매매 처리한다..
- 4) 만기연장 : 당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객의 대출만기를 연장해 줄 수 있다..

#### ※ 대출 약정 및 증액시 인지세를 과세 안내 ※

1. 대상 : 예탁증권담보대출
2. 약정금액별 인지세 과세표(아래 해당금액의 50%는 회사부담, 50%는 고객부담)

약정금액	인지세
5천만원 이하	면세
5천만원 초과 ~ 1억원이하	7만원
1억원 초과 ~ 10억원이하	15만원
10억원 초과	35만원